

2021년도 제3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12. 17.(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 의결사항 ※ 안건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0건(안전번호 제2021-178200호~17825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전들은 모두 2021년 공개된 국내외 영상콘텐츠에 관한 사안들(순번 1번~60번)로서, 예컨대 (영화) 강릉 (2021), (영화) F20 (2021), (영화) 라스트 듀얼 : 최후의 결투 (2021), (영화) 레드 노티스 (2021), (영화) 둔 (2021)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된 영상콘텐츠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건 심의의견서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서명 란 등에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바입니다.

- B 위원: 순번 1번~60번 {'◇◇◇◇◇◇◇◇' 사이트의 [중점](영화)'용과 주근깨 공주'(2021) 등 60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순번1번~60번은 불법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심의대상인 안전번호 제2021-178200호~제2021-178259호(순

번 1번~60번)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13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60건의 복제물에 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건들임.

이들 심의대상물들은 인기리에 상영되었거나 현재 상영되고 있는 최신 영화 영상물들로서 모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들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복제·전송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들이 이들 저작물들을 영리목적의 웹하드 혹은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 사전허락없이 게시한 결과, 저작권자가 얻어야 할 경제적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합법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권리자의 위엄이나 요청이 없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복제 전송의 중단과 삭제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이 타당할 것임.

- E 위원: 순번 1번~60번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2021년 제3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2. 17.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